

의안번호	제 94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청남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한창동 의원 외 7인
발의연월일	2007년 3월 19일

충청북도 청남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94

발의연월일 : 2007년 3월 19일

발 의 자 : 한창동 의원 외 7

□ 제안이유

개편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에 맞게 직명을 변경하고, 관람시간 및 관람 대상을 현실운영에 적합하게 조정함은 물론, 관람객 모집에 따른 인센티브제 및 연수기능을 도입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개편된 충청북도 행정기구의 직명에 맞게 '청남대관리사업소 총무과장'을 '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장'으로 변경 (안 제4조제4항)
- 하절기를 2월~11월로, 동절기를 12월~1월로 조정 (안 제6조제2항)
- 관람객 모집 인센티브제 시행근거 마련 (안 제7조제4항 신설)
 - 관광버스로 단체입장 하는 경우 관람객 15명당 무료입장권 1매 제공
 -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에서 1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하고 당일 그 영수증(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)을 제시하는 경우 무료입장권 2매 제공
- 입장금지 규정 개정 (안 제9조제1항제1호)
 - 정신질환자라도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입장 관람할 수 있도록 개정
- 연수시설 도입 근거 마련(안 제11조제1항제5호)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-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의회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청남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청남대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중 “청남대관리사업소 총무과장이”를“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장이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청남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하절기(2월 ~ 11월) : 09:00부터 18:00까지
2. 동절기(12월 ~ 1월) : 09:00부터 17:00까지

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입장권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관광버스로 단체입장 하는 경우 관람객 15명당 1매
2.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에서 1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하고, 당일 그 영수증(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)을 제시하는 경우 2매

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전염병환자,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질환자

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각종 연수시설 및 체험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	정	안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~③ (생략)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<u>청남대관리사업소 총무과장이</u> 된다.	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....., <u>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과장이</u>		
제6조(개관) ① (생략) 1. ~ 2. (생략) ②청남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하절기(3월~10월) : 09:00부터 18:00까지 2. 동절기(11월~2월) : 09:00부터 17:00까지	제6조(개관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..... 1. 하절기(2월~11월) : 09:00부터 18:00까지 2. 동절기(12월~1월) : 09:00부터 17:00까지		
제7조(입장료 징수 등) ①~③ (생략) <u>< 신 설 ></u>	제7조(입장료 징수 등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입장권을 지급할 수 있다. 1. <u>관광버스로 단체입장하는 경우 관람객</u> <u>15명당 1매</u> 2. <u>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에서 15만원</u> <u>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하고,</u> <u>당일 그 영수증(카드전표 또는 현금</u> <u>영수증)을 제시하는 경우 2매</u> ⑤ (중전의 제4항과 같음)		
④ (생략)			
제9조(입장금지 및 행위제한) ① (생략) 1. <u>정신질환 및 전염병환자</u> 2. ~ 3. (생략) ② (생략)	제9조(입장금지 및 행위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1. <u>전염병환자,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</u> <u>정신질환자</u> 2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		
제11조(시설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 등) ①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<u>각종 체험장</u>	제11조(시설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각종 연수시설 및 체험장</u>		

관계법령 발취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제50조(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(이하 "청남대관리사업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.

제52조(소관사무)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
2. 청남대 시설 유지관리
3. 관광홍보·안내
4.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□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

제42조(소장)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43조(하부조직) ①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운영과와 시설과를 둔다.